

음주운전과 도로의 범위

정신교

I. 서론

주차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 판례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에 한정하고 있는데, 도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면 도로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에서는 '특례법'으로 약칭한다)이 적용되는데, 이는 음주운전을 도로에서 한정하는 것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음주운전의 장소에 따른 형사처벌의 유무가 확연히 달라짐에 따라 일반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로의 개념과 음주운전과 도로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1. 도로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사회통념상의 도로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사회통념상의 도로보다 좁은 의미로 쓰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동법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 도로법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도로법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의 교통에 쓰이는 도로가 모두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의 교통에 쓰이는 도로로서 그 규모가 크고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가리킨다.

3)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사회통념상의 도로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도로법에는 도로를 사회통념상의 도로보다 좁은 의미로 쓰고 있다

2) 제8조에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고 정의한 후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도로법이 정의하는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

사람 또는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도로의 판단기준

1) 도로의 공개성

여기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³⁾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⁴⁾ 따라서 건물부설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공간(주차구획선), 학교교정 등은 도로로 볼 수 없고 병원, 관공서, 대중음식점, 병원, 호텔 등의 통로부분 등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⁵⁾ 즉 어떤 장소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한이나 조건이 있어도 결국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가되는 장소인 것을 인정하면 도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소라 하여도 그 장소의 관리자가 그 장소의 출입구에 말뚝을 게시하는 등 공개를 중지(폐쇄)하면,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공개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⁶⁾, 병원구내의 통로 중 주차구획 외의 통로부분⁷⁾은 도로로 인정하였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⁸⁾, 시청 내 광장주차장⁹⁾, 대학구내¹⁰⁾는 도로가 아니어서 주취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대판 1999. 12. 10. 99도2127.

4) 대판 1992. 10. 9. 92도1662.

5) 대판 1994. 1. 25. 93도1574.

6) 대판 2001. 7. 13. 2000두6909.

7) 대판 1994. 1. 25. 93도1574.

8) 대판 1993. 3. 12. 92도3046.

9) 대판 1992. 9. 22. 92도1777.

10) 대판 1996. 10. 25. 96도1848.

2) 도로이용의 객관성·계속성·반복성

일반교통의 사용에 제공된 장소이기 위해서는 특정장소의 통행공개성 외에 객관적·계속적·반복적인 사실상의 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지(空地)의 소유자가 사람과 차의 통행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통행하지 않거나 때때로 통행하더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때에는 아직 일반교통의 사용에 제공되는 장소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본 판례는 공중변소로 통하는 공지(空地)¹¹⁾, 보수공사 중의 장소¹²⁾, 해안매립지 내의 공장예정지¹³⁾, 하천제방내부¹⁴⁾는 일반교통에 사용에 제공되는 장소로 보았고 주택건축현장¹⁵⁾은 일반교통에 사용에 제공되는 장소로 보지 않았다.

3) 도로의 형태성

어떤 장소의 도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장소가 도로의 외관을 갖추었는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도로로서의 외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또는 사회통념상 도로라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수의 차가 통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꾀하기 위해 법에 의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나 숲 속의 길¹⁶⁾ 등이 어느 정도 도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외관을 갖추지 않은 광장, 공원내의 통로, 사찰 등의 경내, 소학교의 운동장, 해안 매립지내의 일부 노면¹⁷⁾,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도로교통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도로로 된다. 그러나 광장 등의 전부가 항상 도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반교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로 되는 것은 물론이다. 즉 일반교통에 사용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외형을 필요로 한다.

도로의 외양을 갖추었는지의 유무에 관하여 일본 판례는 “일반교통의 사

11) 昭和 35. 4. 16. 大反高裁

12) 昭和 36. 2. 8. 高松高裁

13) 昭和 37. 7. 30. 東京高裁

14) 昭和 37. 11. 29. 仙台高裁秋田支部

15) 昭和 40. 12. 6. 函館地裁

16) 昭和 36. 2. 8. 高松高裁

17) 昭和 37. 7. 30. 東京高裁

용에 제공되는 기타의 장소라 함은 실제로 공중, 즉 불특정다수인, 차량 등의 교통에 사용되어 온 장소를 가리키고, 반드시 도로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¹⁸⁾고 하고 있다.

III. 음주운전과 도로성의 판단

1. 음주운전과 도로성

음주운전에 대한 장소적 적용을 도로에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된다.¹⁹⁾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교통’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주취운전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주취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취운전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위험이 보호법익이라는 점 및 동법 제2조 제24호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취운전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²⁰⁾, 여관주

18) 昭和 45. 6. 3, 東京高裁

19) 2006년도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추세를 보면 총 28,074건이 발생하여 1,217명이 사망하였고, 47,155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운전자 중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은 혈중알콜농도가 0.15%이상 0.19%미만의 상태에서 7,970건이 발생하여 356명이 사망하고 13,22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다음으로 0.10%이상 0.14%이하의 상태에서 6,522건이 발생하여 311명이 사망하고 11,073명이 부상하였으며, 그 다음은 0.05%이상 0.09% 이하의 상태에서 4,842건이 발생하여 232명이 사망하고, 8,053명이 부상하였으며, 0.2% 이상 0.25%미만의 상태에서는 5,055건이 발생하여 176명이 사망하고 8,586명이 부상하였으며, 0.25%이상 0.30%미만에서는 1,524건이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였고, 2,596명이 부상하는 등 0.25% 이상에서는 주취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극심한 주취상태에서는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요인분석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종합분석센터, 2007. 34면 이하.

20) 서울지판 1992. 2. 17, 97노2324.

차장도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²¹⁾고 보았다.

2.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78조, 제107조와 동법 시행규칙,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²²⁾에서 자동차 등²³⁾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3조 제1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법 150조에서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제44조 제2항

21) 대판 1993. 3. 12. 92도3046.

22) 실무나 학계에서는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있다. 주취운전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 알콜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표제를 주취운전으로 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0.05% 이상의 혈중 알콜농도에 이른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주취운전죄가 성립하고 실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동법은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이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취의 상태를 일률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23) 음주나 약물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운동기장치,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운전은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자동차등이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결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동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 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 자동차의 개념에 속하는 것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것이며 동조는 그 외에도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도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자동차 등'이라고 표기하였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 28) 면허행정처분 기준의 취소 처분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0.1%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100일의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3) 특례법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IV. 주취운전의 도로여부의 구체적 검토

1. 주차장의 도로성 판단여부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용이 명확치 않다는 현실을 볼 때 주차장의 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뉜다.(주차장법 제2조)

대법원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²⁴⁾고 하고, 빌딩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24) 대판 1992. 10. 9. 92도1662.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다²⁵⁾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 주차장이 일반에의 공개성과 출입제한여부에 따라 도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취운전은 반드시 도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호텔 부설주차장으로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소규모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볼 수 없어 동법의 주취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²⁶⁾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양쪽 면이 도로와 인접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용이한 경우 도로성을 인정하였다²⁷⁾. 또한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과 병원구내의 주차구획외의 통로부분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⁸⁾. 이렇게 볼 때 주차장의 도로성 판단여부에 대해 주차장의 모든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이 공개되어 일반인의 차량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 주차장의 주차구획외의 통로부분은 도로로 인정된다고 본다.

2. 주취운전과 도로성 판단여부

1) 도로교통법과 주취운전

대법원은 주취운전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주취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취운전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위험이 보호법익이라는 점 및 동법 제2조 제19호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취운전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의 성립을 부인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건물

25) 대판 1993. 7. 13. 92누18047.

26) 대판 1992. 4. 14. 92도448.

27) 대판 2005. 9. 15. 2005도3781

28) 대판 1994. 1. 25. 93도1574.

에 부설된 주차장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²⁹⁾. 여관주차장도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³⁰⁾고 보았다.

2) 특례법과 주취운전

특례예외조항은 단순히 도로교통법의 조문을 원용(단서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하고 있는 것과 도로교통법위반을 전제(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특례법은 모든 장소에서 발생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규정의 형식이 도로교통법의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이라는 형법해석의 원칙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교통법의 조문을 원용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³¹⁾ 그러나 판례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차의 교통에 의한 것이면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³²⁾ 음주운전사고의 경우도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해야 된다는 견해는 공공의 도로영역, 즉 도로에 국한시키면서 특례법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도로교통 사고를 염두에 두고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상 특례를 조정하는데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을 중시하면서 형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특례법에서의 '차의 교통'을 '도로상에서의 차의 교통'으로 제한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생각건대 음주와 관련한 교통사고(주취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례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의 교통'

29) 서울지판 1992. 2. 17, 97노2324.

30) 서울지판 1992. 2. 17, 97노2324.

31) 신용균 외, 도로교통법해석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2, 24면

32) 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1988. 5. 24, 88도255).

으로 해석하여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는 특례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형법 제268조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주취운전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공공의 위험이 보호법익이라는 점 및 동법 제2조 제19호가 '도로'에서 차의 그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운전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취운전이 도로상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취운전에 있어서 '도로'란 단순히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범행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취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과 특례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의 교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남현(2006),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방극봉(2000),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법제」 제 516호.
3. 신용균 외(2002), “도로교통법해석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4. 황인규(1993),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판례월보」 제268호.
5. 도로교통공단(2007), “교통사고요인분석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종합분석센터.
6. 경찰청(<http://police.go.kr>).



정신교